

통신

통신서비스협정문의 적용범위 (제14.1조)

-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며, 아래 사항을 포함
 -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,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,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(방송 또는 케이블 배분 등에는 일반적으로 적용안됨)

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(제14.2조)

-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
-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(integrity)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
 - ※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(interconnection)을 위한 구체적 기술 요건,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 확보를 위한 요건 및 단말기 등 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

공중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 (제14.3조)

- 공중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, 번호이동, 동등다이얼(dialing parity)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
 - 단, 동등다이얼에 대해서는 미측 무선분야 및 우리측 국제전화 서비스 분야를 각각 적용 배제
 - ※ 상호접속(interconnection) :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
 - ※ 동등다이얼: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자와 접속시 추가 코드나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동일한 자리수의 식별번호 부여 (예)국제전화 3자리 (001, 002 등)
 - ※ 번호이동(number portability) :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(현재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해 시행 중)

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(제14.4~14.11조)

-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 사항을 부과
 - ※ 지배적 사업자 :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
- 구체적으로 협정문상 보장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 관련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.
 - (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) 상대국의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·자회사·계열회사 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
 - (경쟁보장장치)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

※ 교차보조(cross-subsidization) :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·계열사 등에 보조하는 행위

- (재판매)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부과 금지

※ 재판매(resale) :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것

- (망 요소 세분화)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,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규제 기관에 부여

- (상호접속) 상대국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비차별적으로 제공

※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위해서는 표준상호접속협정 또는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을 선택하여 새롭게 상호접속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

- (전용회선 서비스)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

※ 전용회선(leased circuits) : 공중통신사업자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지점간 또는 다지점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통신회선

- (설비 병설)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

- (전주·관로·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)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전주·관로·도관의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

- ※ 전주(Poles) : 전신, 전화, 전등 등의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
- ※ 관로(ducts) 및 도관(conduits) :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데 모아서 수용하는 강관 및 지하터널

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[제14.13조]

□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 의무 부과 금지

-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, 서비스 요율의 비용상 정당화, 서비스 요율표 제출, 자사 망의 특정 고객과 연결, 공중통신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 준수
- 단, 반경쟁적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,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치 가능

보편적 서비스 [제14.15조]

-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,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

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[제14.17조]

- 주파수·번호·선로설치권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운영
-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
 - ※ 미국 주파수 분배는 연방통신위원회 웹사이트 (<http://reboot.fcc.gov/reform/systems/spectrum-dash-board>) 에서 확인 가능

-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 보유
-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사용과 통신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

통신 분쟁의 해결 (제14.19조)

- 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통신 규제 기관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
-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요청한 상대국 공중 통신 사업자의 상호접속의 조건·요율 관련 통신 규제 기관의 심사 청구 가능
- 통신 규제 기관의 결정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기업의 통신 규제 기관의 재검토 요청 가능
- 통신 규제 기관의 결정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기업이 사법당국에 대한 재심 요청 가능

참고: 미측 관련 국내법 규정

- 수수료 미지급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(FCC)의 인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FCC에 이유 제시 가능 (47 USC 159(c))
- 미국 통신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FCC 또는 연방법원에 이의 신청 가능(47 USC 206~208)
- 상호접속 관련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조정해줄 것을 협상당사자가 주(州)위원회에 요청 가능 (47 USC 252)
- FCC의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, 법원의 재심 요구 등 가능(47 USC 401~408)

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 (기술선택의 자율성) (제14.21조)

-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 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
 - 무선분야의 공공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과적·효율적 이용, 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 보장, 법집행,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등으로 명시
 - 다만,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